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
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6년 4월 7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04/04
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284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,” 를 “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,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□ 개정이유

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
(안 제2조제2항)